

고려 초 공복제(公服制) 도입과 복색(服色) 운용에 관한 연구

임 경 화*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교수**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Official Uniform and the Uniform Color Regulation in the Early Goryeo Dynasty

Kyoung-Hwa Lim* · Soon-Che Kang**

Doctor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5. 10. 7 투고)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done based on the Jeon Si Gwa(田柴科) regulation, the monumental inscription material and the former studies.

The background of adapting the official uniform regulation in the early Goryeo Dynasty has been surveyed. Differentiating criterion in the official uniform color like purple(紫衫), red(丹衫), red(緋衫), and green(綠衫) has been studied.

The official rank had been classified by the color of the official uniform in the early Goryeo uniform regulation. The lower class had worn purple(紫衫). The purple wearing class had not been the government post but the official rank. Those who worked for the Palace had worn purple color since purple color represented the Imperial Palace on which TAI-IL(太一), that is, the highest one of gods dwelt.

Those who had worn red(丹色) in the monumental inscription had worked for the job associated with the military service or Hanlim savant(翰林學士) of Kwangmun Academy(光文院) and Hanlim Academy(翰林院). Dan Seo(丹書) which recorded King's commands also means the monumental inscription. In the Goryeosa(高麗史), the military class had been only in Dan Sam(丹衫). That means those class worn Dan Sam(丹衫) could have been as the strong supportive class for the Dynasty.

In the early Goryeo Dynasty, the four colored uniform regulation had followed the enforcing policy of the royal authority.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uniform regulation had been used as a way of enrolling the new supporting class into the existing official system. Dan Sam(丹衫) which had been worn only in the early Goryeo can be seen as the special class for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Key words: official uniform(공복), Goryeo(고려), monumental inscription(금석문), Jeon Si Gwa(田柴科) regulation(전시과 제도), official uniform(관복)

I. 서론

고려 초기는 왕위계승과 관련된 호족세력들 간의 다툼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나 점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된다. 특히 4대 광종은 서경천도를 백지화하여 정종과 유대가 깊은 서경세력의 중앙 진출을 막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이들이 공신들의 사병(私兵)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없앴으며, 과거제를 실시하여 기존의 대호족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국가의 체제 정비가 가속화되는데 관료들의 공복(公服) 제정(制定)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고려 최초의 공복제도는 『고려사』에 “公服 光宗十一年 三月 定百官公服 元尹以上紫衫 中壇卿以上丹衫 都航卿以上緋衫 小主簿以上綠衫.”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자(紫)·단(丹)·비(緋)·록(綠) 사색(四色)의 공복 착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원윤(元尹), 중단경(中壇卿), 도항경(都航卿), 소주부(小主簿)가 당시에 어떠한 관직(官職), 혹은 관품(官品)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더러, 공복의 색채구성도 법흥왕대의 사색공복제에 근거한 ‘자·비·청·황’의 신라의 복색, ‘자(紫)·비(緋)·록(綠)·청(青)¹⁾’의 당(唐), ‘자(紫)·주(朱)·록(綠)·청(青)²⁾’의 송(宋)과는 다른 ‘자·단·비·록’으로서, 단색이 고려초기의 공복제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양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공복제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 고려 초 공복제정의 원칙이나 착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복제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경종대의 전시과(田柴科) 제도에 주목하였다. 이를 보면 자삼층(紫衫層)·단삼층(丹衫層)·비삼층(緋衫層)·녹삼층(綠衫層)을 문반·잡업·무반 등으로 구분하여 품에 따라 전(田)과 시(柴)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전시과 제도는 관료체제가 체계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전시과 제도와 공복과의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고려 초 공복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인 금석문

자료의 분석과 함께 전시과 제도를 초기 공복제도에 연계하여 보면, 고려 초 공복제도에 대한 원칙이나 착용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대(前代)의 공복제도와 고려 초기 공복제를 비교하여 고려 초기 공복제도의 도입 배경을 고찰하고, 전시과 제도와 금석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자삼(紫衫)·단삼(丹衫)·비삼(緋衫)·녹삼(綠衫) 등의 색채의 구분 기준과 고려 초기 공복제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재고하려 한다. 이는 고려만의 공복 색채로 규정된 단색의 사용 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데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분석 및 논의

지금까지 진행된 고려 초기 공복제를 다룬 연구³⁾들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고려의 공복제가 후주의 영향이라는 견해와 신라의 영향이라는 견해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복제의 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김동욱, 신호철, 김당택은 관계와 관직⁴⁾을 같이 고려하여 구분했다고 주장하고, 이현숙은 관직을 주로 고려하여 색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시과에 기록된 자삼·단삼·비삼·녹삼의 구분 기준인 인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를 다양한 견해들을 분석하여, 공복제의 기원, 공복색채 분류의 기준, 전시과의 인품해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고려 공복제의 기원에 관한 논의

먼저 공복제도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다. 신호철은 광종이 후주인 쌍기를 중용하고 이들에 의해 개혁정치가 주도되었기 때문에 후주 제도를 받아들였을 것이라 주장하고, 황선영은 관료제가 확립된 당나라와 골품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라사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의 복색(服色)이나 그 적용범위는 신라 법흥왕 아래의 제도가 계승된 것으로 보았다.

<표 2>를 보면, 『삼국사기』 기록에 원윤이란 관품이 등장하고 있고, 『고려사』 여복지 서문에 고려

〈표 1〉 고려 초기 공복제에 대한 제연구의 내용 분석

출처	고려 공복제의 기원	신라 공복제의 기준	고려 공복제의 기준	공복제의 영향	전시과 人品解석	비고
신호철(1981) 고려 광종대의 공복제도	후주	관등을 기준 골품제와 관련	원윤은 관등 中壇卿, 都航卿, 小主簿는 관직	위계질서에 의해 상하의 구분을 나타냄	관품 役分의 표시	-
김당택(1981) 최승로의 상서문에 보이는 후생과 경종원년 전시과			원윤이하 官階를 맡은 자는 관직을 중시하여 구분	관계와 관직을 하나의 국가체계 속에 포함		관직의 중요성이 반영
황선영(1987) 고려 초기 공복제의 성립	신라	신분(골품제)에 의한 복색구분	신라제를 바탕 관직 (신분을 전제)	신분제의 재편성	고려식 신분제 (재능에 따라 신분 변동)	신라의 靑·黃이 광종대에 綠衫으로 바뀜
황선영(1991) 고려 시정전시과의 분석				고려초에 존속했던 관료내부의 身分帶를 상징		
이현숙(1992) 신라말 魚袋制의 성립과 운용	신라	관직 '당'공복제 기준	관직	광의의 行守제	-	관직과 관품의 차이를 관계(官階)에 의해 어대제로 표시
강은경(1999) 고려시기 향리 공복제	후주	-	官階→官職	-	-	色으로 상위공복을 세분화

는 개국초 신라의 제도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어 공복제에 있어서도 신라의 복제를 따랐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유송옥(1998)은 더 나아가 태조 20년 이후 잠정적으로 사용하여 온 통일신라의 '자·비·청·황' 혹은 '자·단·비·청'의 공복제에 후주의 의관제도 개념이 유입되어 4대 광종 11년의 공복의 고려 복색제로 정착되었다고 하였다.⁵⁾ 그러나 '자·비·청·황'은 법흥왕대의 기록으로 통일신라에서도 계속 사용되었는지는 확신 할 수 없고, '자·단·비·청' 또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표 2〉 고려 공복제가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

출처	내용
『삼국사기』 권 제 50 열전 제 10 궁예	又設正匡元輔大相元尹佐尹正朝 甫尹軍尹中尹等品職
『고려사』 72 志 26 輿服 서문	高麗太祖開國, 事多草創, 因用羅舊

또 〈표 3〉을 보면 『고려사절요』에 후주에서 사

신을 보내와 왕을 책봉하고 백관(百官)의 의관(衣冠)을 화제(華制)를 따르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화제라는 것은 후주의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증보문헌비고』에도 기록되어 있다.

〈표 3〉 고려 공복제가 후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

출처	내용
『고려사절요』 광종 7년	周遣將作監薛文遇來加冊王爲開 府儀同三司檢校太師仍令 百官衣冠從華制
『증보문헌비고』 권 79 예고 26 신복 고려	十一年定百官公服先是周令百官 章服並從華制至是定制

여기서 신라와 후주에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의 공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당에서는 '자(紫)·비(緋)·록(綠)·청(青)'⁶⁾, 송에서는 '자(紫)·주(朱)·록(綠)·청(青)'⁷⁾의 4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신라 통일 이전 법흥왕대의 기록에 따른 자(紫)

〈표 4〉 唐 · 宋 公服色의 비교

番	정관(真觀: 당 태종) 44년(630)	상원(上元: 당 숙종) 원년(760)	宋	宋신종 원년 公元1078 至1085년
1			紫	
2	紫	紫	紫	紫
3				
4	緋	深緋	朱	
5		淺緋		
6	綠	深綠	綠	緋
7		淺綠		
8	青	深青	青	綠
9		淺青		
출처	구당서 권45 지25 여복	구당서 권45 지25 여복	송사 권153 지106 여복5	송사 권153 지106 여복5

· 비(緋) · 청(青) · 황(黃)은 통일신라대에 이르면 『삼국사기』 『고려사』의 기록인 〈표 5〉의 내용과 같이 당제(唐制)와 유사한 제도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5〉 신라 공복제가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

출처	내용
『삼국사기』 권 제 5 신라본기 제 5 진덕왕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삼국사기』 권 제 5 신라본기 제 5 진덕왕	三年,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고려사』 72 志 26 輿服 서문	至新羅太宗王, 請襲唐儀, 是後, 冠服之制, 稍擬中華

그러므로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신라 통일 이후의 복제(服制)와 당의 복제를 계승한 후주의 복제는 같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통일신라와 후주의 공복색은 동일의 당 복제에 근원을 둔 것이므로 고려 공복제를 통일신라나 후주와 관련시켜 어느 쪽에 기원을 두었는가 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고려 초기 공복제도의 색채 구분

고려초기의 공복제도는 '자(紫) · 단(丹) · 비(緋) · 푸(綠)'의 복색(服色)으로 구분되는데, 광종대의 공복제 기록에 색을 나누는 기준은 원윤(元尹) · 중단경(中壇卿) · 도항경(都航卿) · 소주부(小主簿)이다.⁸⁾

원윤(元尹)은 『삼국사기』 권 제 50 열전 제 10 궁예(904)⁹⁾에 기록되어 있고, 『고려사』 권 75 선거지(選舉志) 3 전주 향직조¹⁰⁾의 기록에 의해 6품의 관계(官階)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려사』 1 태조세가(太祖世家) 원년 6월 신유(辛酉)에 나타난 인사이동(人事移動)에 관한 기사 중에는 "임상난위도항사경(林湘煥爲都航司卿)"이라 하여 임상난이 도항사(都航司)라는 관서(官署)의 차관격(次官格)인 도항사경(都航司卿)에 임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신호철(1981)은 여기서의 "도항사경"이 바로 도항경(都航卿)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며, 도항경은 관품(官品)이라기보다는 관직(官職)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고려사〉 최승로전¹¹⁾의 기록을 통해서도 관직에 의해 공복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선영(1987)은 삼국사기 직관(上)志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상당(上堂) · 적위(赤位) · 청위(青位)는 관직으로서 각각 경(卿) · 감(監) · 주부(主簿)¹²⁾에 해당되거나 또는 부사(副使) · 판관(判官) · 녹사(錄事)¹³⁾의 이칭이라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원윤(元尹)은 관계(官階)를 나타내며, 중단경(中壇卿) · 도항경(都航卿) · 소주부(小主簿) 등은 관직(官職)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시(久視) 원년((則天武后) 16, 700)의 어대수여 규정에 '職事三品以上龜袋宜用金飾四品用銀飾五品用銅飾上守下行皆依官給'¹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현숙(1992)은 여기서 관(官)은 당대(唐代) 문집에서 관직의 뜻으로 사용한 용례에 따라 관직으로 해석

〈표 6〉『고려도경』 紫色 사용예

기록	사용자	8도			기타
		쓰개	衣	帶	
제7권 관복	왕		紫羅公服	玉帶	象牙
제7권 관복	太師, 太尉, 中書令, 尚書令	幘頭	紫文羅袍	玉帶(金魚)	
제7권 관복	侍中, 太尉, 司徒, 尚書, 中書門下侍郎, 平章事, 參知政事, 左右僕射, 政堂文學, 判尚書吏部事, 樞密使, 同知院奏事		紫文羅袍	毬文金帶 (金魚)	
제7권 관복	左右常侍, 御史大夫, 左·右丞, 六尚書, 翰林學士, 承旨學士이상 및 祗待國朝使命接伴官, 館伴官		紫文羅袍	毬文金帶 (金魚)	
제7권 관복	御史中丞, 諫官, 紙事, 侍郎, 州·牧의 留守, 使·副使, 閣門執贊, 六尚直官, 都知兵馬, 四部護使 등과 특별한 恩數를 입은자, 王의 세자 및 王의 형제		紫文羅袍	御仙金帶	
제11권 장위1	신호좌우친위군			紫帶	
제11권 장위1	홍위자우친위군	紫帽			
제11권 장위1	상육군위중검람장		紫衣	紫文勒巾	
제11권 장위1	금오장위군		紫寬袖衫		
제11권 장위1	공학군		紫文羅袍		
제12권 장위2	관부문위교위		紫文羅窄衣		
제12권 장위2	육군산원기두		紫文羅窄衣		
제12권 장위2	좌우위견룡군		紫窄衣		
제12권 장위2	영군랑장기병		紫羅戰袍		
제12권 장위2	영병상기장군		紫羅窄衣紫 袴		
제13권 병기	行鼓			紫帶	
제15권 車馬	국관대신				紫羅繡轎
제18권 道教	國師		紫裳		
제18권 道教	삼중화상대사		紫黃貼相福 田袈裟 紫裳		
제18권 道教	사미비구		紫服		
제19권 民庶	工技		紫袍		신역시에만 관에서 내림
제21권 阜隸	散員 (중국사신이 이를때마다 소반을 받들고 술잔을 들이며 옷을 들고 수건을 받드는 이)	幘頭	紫羅窄衣		무신의 자제
제21권 阜隸	房子 (使館의 심부를 하는자)	文羅頭巾	紫衣	角帶	
제21권 阜隸	小規侍 (궁중에서 부리는 아이)	頭巾	紫衣		
제22권 雜俗1	설호		紫衣		
제24권 節仗	充代下節 ¹⁵⁾		紫羅窄衫		
제24권 節仗	上節(도할관, 법록도관, 수선도순검, 지사겸순검, 관구주선 오록주선)		紫衣		
제24권 節仗	控鶴軍4인		紫繡花袍		임금을 宿衛하는 군사

하고, 관직과 관계의 품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 관직의 품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어대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또 〈사물원기〉衣裝帶服部魚袋에 의하면 신룡(神龍) 초(初) 공복을 하사할 때 어대를 주는데 관품(官品)에 제한두지 않았다고 하고, 〈송사〉여복지편에 어대에 관직과 성명을 새겼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직과 관품이 다른 경우는 관직이 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 초기 공복제도에서 자색은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6, 7, 8〉은 〈고려도경〉에 나타난 자색과 단색, 비색의 사용 예를 발췌 기록한 것인데, 특이하게도 단색은 복색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칠(丹漆)에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단색은 고려 초 공복에만 사용되었던 고려 초 특유의 복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려도경〉의 자색 사용 예를 일괄해 보면, 왕이 중국 사신이 오면 자라공복을 착용하며¹⁶⁾, 신분이 낮은 방자(房子), 소친시(小親侍) 등의 자색 착용에도 나타난다. 또 공기(工技)의 복장은 백저포에 조건(阜巾)인데 신역을 맡을 때에는 관에서 자포(紫袍)를 내어 준다하였고,¹⁷⁾ 『고려사』에 의종 21년(1167)에 대궐에 주둔하여 근무하는 내수검에게 자의(紫衣)를 입혔다는 등의 기록이 있어,¹⁸⁾ 가장 상위의 색으로 여겨지는 자색이 계층에 무관하게 사용한 예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 자색은 신라에서도 진골이 아닌 6두품이 착용한 예가 있어 단순히 자색을 상류층 복색으로 단정 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呂氏春秋〉¹⁹⁾에 의하면 태일(太一)은 양의(兩儀)에서 나오고 양의(兩儀)는 음양(陰陽)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 태일(太一)이 있는 곳이 자궁(紫宮)이고²⁰⁾, 〈사기〉에서 사성(四星) 끝에 있는 커다란 별은 정비(正妃)이고 나머지 3개의 별은 후궁(後宮)과 같은 것인데 이를 둘러 애워싼 12개의 별은 왕실을 지키는 번신(藩臣)으로 이를 모두 자궁(紫宮)이라 하였다.²¹⁾ 자궁(紫宮)은 천자(天子)의 대궐을 가리키는데, 자색(紫色)의 개념을 나타내는 태일(太一)이 음양에서 나오며 그것은 가장 귀한 천신(天神) 혹은 천자(天子)가 있는 궁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즉 자(紫)는 자궁(紫宮)으로 궁

궐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자색의 복색은 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착용하는 복색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색이 공무(公務)를 위한 상징적 복색(服色)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계급도 자색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지며, 전시과 기록에서 자색충만 문반(文班)·잡업(雜業)·무반(武班)의 구분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7〉『고려도경』丹色 사용예

기록	사용자	용도	기타
제3권 성읍		丹漆□帛	
제5권 궁전		대마루	丹碧藻飾
제5권 궁전		堵 (階계와 같음)	丹漆
제13권 병기	왕이 조서 받을 때	竿丹漆	
제15권 거마	왕	彩輿 丹漆	(강학군 40인이 매개 함)
제15권 거마		肩輿 花文丹漆	

〈표 8〉 고려도경』緋色 사용예

기록	사용자	용도	기타
제7권 관복	경감	緋文羅袍	육시경이, 성부승랑, 국자유관, 비서전직
제7권 관복	조관	緋文羅袍	사업박사(종4품), 사관교서(정9품), 태의·사 천의 녹사(정9품)
제12권 장위2	천우 우장위군	緋着衣	
제14권 기치	장위군	緋衣	

3. 전시과의 인품에 관한 논의

전시과는 문무백관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던 제도이다. 고려가 처음으로 시행한 토지정책은 태조 23년(940년)에 실시한 역분전인데, 이는 태조가 신왕조에 대한 충성도와 공로의 대소에 의거해 논공행상(論功行賞)의

표창적인 의도에서 시행한 분지제(分地制)이다. 전시과는 경종 원년에 시정(始定)되어 목종(穆宗) 원년에 개정을 하였고 문종 30년에 경정(更定)되었다.

〈고려사〉 식화지에 기록된 경종 원년(976년) 전시과(田柴科)에는 관품(官品)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으로 정하였다²²⁾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인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강진철은 인성의 선악(善惡)·인격의 등급을 가리키는 인품으로 기준을 삼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관품과 인품을 병용했으리라 해석하였고, 전기옹은 9품 체계안의 관리들은 관품으로, 관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잡리들에게는 인품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용필은 중국 고대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에 의거하여 인품은 관품과 상대적인 향품이라고 해석하였다. 황선영은 인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통일 후 급격한 자삼총의 증가는 고려의 관료체제를 신분에 의한 관계 중심에서 능력에 의한 관직 중심으로 변질시킨 요인이 되었으며, 성종대에 이르러서 공복색은 정치적 신분표시가 아니라 관직의 상징으로 변모했다고 보았다.²³⁾ 또한 단지 품계(品階)만을 가진 산관(散官)에게도 인품으로 전시를 지급한다는 것은 산관이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²⁴⁾ 자삼총을 구분하는 기준인 원윤(元尹)을 비롯한 관계(官階)는 중앙의 관료

뿐만 아니라 지방의 호족들에게도 수여되고 있어 전시과는 지방 호족층까지 포함하는 규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권78 전제 전시과〉의 태조 23년 역분전의 급전(給田)기준에서, '관계(官階)를 놓하지 않고 성행(性行)의 선악(善惡)과 공로(功勞)의 대소(大小)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기록은 전시과의 인품이 향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의 공복제는 직무를 우선으로 복색을 구분하였으며, 전시과에 기록된 복색 구분 기준인 인품이라는 것은 지방 호족층과 신진 세력을 기준 관료 세력에 포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III. 고려 초기 공복제도의 특수성

1. 전시과 제도를 통해 본 공복제도

경종 원년 전시과(田柴科)를 보면(표 10참고) 자삼은 품에 따른 전과 시를 지급한 반면에 단삼은 문반·무반·잡업, 비삼은 문반·잡업, 녹삼은 문반·잡업으로 구분하여 전과 시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삼층에 문반·무반·잡업의 구분이 없는 점과 단삼층에만 무반(武班)이 들어있는 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자색은 앞서 살펴본 대로 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복색이었기 때문에 자색의 공복에 있어서도 문반·

〈표 9〉 '인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학자	주장	근거	출처
김당택	인품에 대한 언급 없음	단삼(丹衫)이라는 관계(官階)의 상하를 무시하고 관직의 고저(高低)에 따라 복색(服色)을 구분	최승로의 상서문에 보이는 후생과 경종 원년 전시과(1981) 고려광종연구
강진철	관품과 인품의 병용	品等을 인품, 역분등을 참작해서 조절	전시과 제도의 제정 및 그 내용 고려토지제도사연구(1980)pp.35-37
전기옹	관품과 인품의 병용	9품 체계안의 관리들은 관품으로 관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잡리들에게는 인품이 적용	고려 경종대의 정치구조와 시정전시과의 성립 기반 진단학보 59(1985)
노용필	향품	중국 고대 九品官人法에 의거 관품은 정치적 신분의 표식이고 향품은 향리사회의 신분표식	고려 경종초 개혁정치와 그 추진세력 진단학보 91(2001)
황선영	고려식 신분제 인품 = 신분	골품에 대응하여 설정된 인간의 등급	고려초기 공복제의 성립 부산사학 제12집(1987)

<표 10> 전시과 수급표-『고려사』 경종 원년

紫衫			丹衫						緋衫			綠衫						綠衫			
文班			雜業			武班			文班			雜業			文班			雜業			
品	田	柴	品	田	柴	品	田	柴	品	田	柴	品	田	柴	品	田	柴	品	田	柴	
1	110	110																			
2	105	105																			
3	100	100																			
4	95	95																			
5	90	90																			
6	85	85																			
7	80	80																			
8	75	75																			
9	70	70																			
10	65	65	1	65	55	1	60	55	1	65	55										
11	60	60	2	60	50	2	-	-	2	60	50										
12	55	55	3	55	45	3	55	45	3	55	45										
13	50	50	4	50	42	4	50	42	4	50	42	1	50	40	1	-	-				
14	45	45	5	45	39	5	45	39	5	45	39	2	45	35	2	45	35	1	45	35	1
15	42	40	6	42	30	6	42	30				3	42	30	3	42	30	2	42	33	2
16	39	35	7	39	27	7	39	27				4	39	27	4	39	27	3	39	31	3
17	36	30	8	36	24	8	36	24				5	36	20	5	36	20	4	36	28	4
18	33	25	9	33	21	9	33	21				6	33	18	6	33	18	5	32	25	5
			10	30	18	10	30	18				7	30	15	7	30	15	6	30	22	6
												8	27	14	8	27	14	7	27	19	7
																		8	25	16	8
																		9	23	13	9
																		10	21	10	10

무반·잡업 등의 구분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삼층에만 무반이 들어있는 점에 대하여 김당택²⁵⁾은 '당시의 무반직은 문반이나 잡업처럼 관직이 세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황선영(1991)은 단삼(丹衫)층이 정조(正朝)·정위(正衛) 등 고려 초기 관계(官階)를 갖고 있음에 반해 비삼(緋衫)층은 사찬(沙粲)이라는 신라 관계(官階)를 갖고 있으며 고려의 단삼(丹衫)의 관직자들을 신라의 관계에 적용시키면 6두품의 관등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단삼은 신라의 비삼을 단순히 고쳐 부른 명칭이며 서로 동급(同級)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단삼(丹衫)은 고려계(高麗系)고 비삼(緋衫)은 신라계(新羅系)이기 때문에 단삼층에만 무반이 존재하는 것도 고려 무반에 신라계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²⁶⁾

또한 전시과의 수급체계를 볼 때 관계 체계와 토지급여 체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아 고려 초의 공복제도를 緑→緋→丹→紫 순의 관품에 의한 계층적

복색구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순으로 사료된다.²⁷⁾ 이는 전(田) 45결과 시(柴) 35결을 받던 녹삼(綠衫) 1품의 관리가 8계(階)를 뛰어 비삼(緋衫) 1품으로 승진했을 경우 그에 대한 토지급여가 겨우 5결을 더 받게 되고 자삼 18품이 되면 오히려 전 12결 시 10결을 더 적게 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복색에 있어서 동일한 품을 기준으로 볼 때 복색에 따른 전시 지급의 구분이 紫→丹→緋→綠의 순서로 되어 있음은 색깔의 우위성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공복제정은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제정되며,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료체계 성립의 공적인 인정의 표시이다.²⁸⁾ 경종때 친시가 운영되었는데 종전까지의 관례와는 달리 친시(親試) 후 즉시 신 급제자들에게 바로 석갈(釋褐)을 국왕이 명령한다는 것은 기존 관료 체계의 권위를 더 이상 우대하지 않고 신 급제자들에게 국왕의 총애를 표출시켜 왕권을 강화시

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²⁹⁾ 이런 점에서 공복제도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토지 지급이 정치 세력과 연관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시과 제정이후 경종 2년에 제정된 훈전(勳田)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훈전은 개국공신과 향의귀순성주(向義歸順城主)에게 별도로 주어진 토지였다³⁰⁾. 훈전 지급대상으로서의 향의귀순성주(向義歸順城主)는 경종 초에 이루어진 시위군(侍衛軍)의 감소, 상설 지방관 파견의 결과로 영토 확장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고려로 귀부한 북방 지역의 호족들을 그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¹⁾ 이는 전시과로 인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중국에서도 당 현종 때 군주 독재권을 강화해가면서 신흥관료층이 대거 진출한다. 이 과정에서 군공(軍功)에 대한 부상으로써 공복과 어대가 특사형식으로 남발되었던 것도 그 한 예이다.³²⁾³³⁾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광종의 사색공복제도는 왕권 강화를 위한 후원세력인 새로운 세력층을 기준의 관료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용필³⁸⁾이 제시한 것처럼, 인품을 향품으로 해석할 때 해당지역의 실력자가 중앙 관료로 진출하는 상징적 의미로 공복제도가 사용되었으리라 본다. 이는 고려 왕조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방호족들에게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이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고자

〈표 11〉 자색(紫色) 공복 착용 예

관계(官階)	관직(官職)	호	이름	어대	연도	출처
태상(太相)	검교상서(檢校尚書) 전수집사시랑 (前守執事侍郎), 좌복야겸(兼)여사대부 (御使大夫), 지원봉성사(知元鳳省事) 한림학사수병부시랑지서서원사	상주국 (上柱國)	崔彥撝 崔仁澆	자금어대 (紫金魚袋)	태조23년 (940)	강릉 지장선원 낭원(朗圓)대사 오진탑비 ³⁴⁾ 봉화태자사 낭공대사 백월서운탑비문 ³⁵⁾
태상(太相)	전수예빈령원봉령겸지제고 (前守禮賓令元鳳令兼知制誥)	상주국 (上柱國)	손소(孫紹)	자금어대 (紫金魚袋)	태조26년 (943)	谷城 太安寺 廣慈大師碑文 ³⁶⁾
통직랑 (通直郎) □□	한림학사 (翰林學士)	.	김정언 (金廷彦) ³⁷⁾	자금어대 (紫金魚袋)	광종10년 (959) 이후	覺淵寺通一大師塔碑

□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글자임

과거에 응시하거나 시위(侍衛)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2. 금석문을 통해 본 공복제도

금석문(金石文)이란 철이나 청동 등의 금속성 재료에 기록한 금문(金文)과 비석처럼 석재(石材)에 기록한 석문(石文)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표 11〉, 〈표 12〉, 〈표 13〉은 탑비 등의 금석문에 기록된 공복내용이다. 여기에는 왕명을 받아 고승(高僧)의 업적을 기리는 글을 지은 찬자(撰者)와 글을 새긴 사람에 대한 관품 관직 공복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유달리 단색 공복 착용자가 많다. 이는 금석문 등이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이 당시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장려한 당시의 정책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복에는 어대가 따르는데 자색공복에 금어대를, 비색공복에는 은어대를 사용한다. 그러나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⁴⁰⁾에 의하면 단색공복에 금어대를 사여 받아 단삼층이 자삼층에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적 지위에 위치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를 조서(詔書), 단서(丹書)라고 하는데, 단서는 금석(金石)에 새긴 글이란 의미도 있다.⁴¹⁾ 금석문의 단색 착용자를 보면 병부관련 직무를 맡거나 광문원(光文院)과 학사원의 한림학사들이다. 또한 어대를 패용함은 왕실의 신변안전을 위한 것인데 단삼층에 상위의 어대를 주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국가의 공훈자에게

<표 12> 단색(丹色) 공복 착용 예

관계(官階)	관직(官職)	준	이름	여비	연도	출처
정조(正朝)	□□병부대감 (□□兵部大監)	상주국(上柱國)	이환추(李桓樞)	단금어대 (丹金魚袋)	태조22년 (939)	菩提寺大鏡大師 玄機塔碑 ⁴³⁾
정조(正朝)	□광평시랑 (□廣評侍郎)	주국(柱國)	유훈율(柳勳律)	단금어대 (丹金魚袋)	태조22년 (939)	無爲寺先覺大師 遍光塔碑 ⁴³⁾
통직랑 (通直郎) 정위(正衛)	한림학사 (翰林學士)	.	김정언(金廷彦)	단금어대 (丹金魚袋)	광종9년 (958)	玉龍寺洞真大師 寶雲塔碑 ⁴⁴⁾
정조(正朝)	상대등(上大等)	.	김희일(金希一)	단금어대 (丹金魚袋)	광종13년 (962년)	龍頭寺鐵幢竿記
정위(正衛) 봉의랑(奉議郎)	한림학사(翰林學士) 전수병부경 (前守兵部卿)	.	이몽유(李夢遊) ⁴⁵⁾	단금어대 (丹金魚袋)	광종16년 (965)	鳳巖寺靜真大師 圓悟塔碑 ⁴⁶⁾
문림랑 (文林郎)	한림원서박사 (翰林院書博士)	.	장단열(張端說) ⁴⁷⁾	단은어대 (丹銀魚袋)	광종16년 (965)	鳳巖寺靜真大師 圓悟塔碑

<표 13> 비색(緋色) 공복 착용 예

관계(官階)	관직(官職)	준	이름	여비	연도	출처
사찬(沙漬)	전수홍문감경 (前守興文監卿)	.	구족달(仇足達)	비은어대 (緋銀魚袋)	태조26년 (943)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⁴⁸⁾

주기 위해 제정한 훈호(勳號)인 상주국은 정 2품관에게 주었는데 단색 공복자에게 수여된 예도 나타나고 있어, 자·단·비·녹의 공복색에 대한 순차적 계급 체계와는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고려 초기 공복제도는 당시의 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고려 초기에 한하여 공복색에 단색이 존재하고 단삼층에만 무반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불교와 관련된 금석문 자료에 단삼층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왕권강화를 위해 불교를 장려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왕권강화를 위한 집단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또한 단서(丹書)라는 의미와 결부시켜 볼 때 고려 초기 공복제도는 정치적 배경이 내재되어 있으며 왕권강화를 도운 특수 집단이 단색(丹色) 공복을 착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고려 초기 공복제도의 도입 배경을 고찰하고 전시과 제도와 금석문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삼(紫衫) 단삼(丹衫) 비삼(緋衫) 녹삼(綠衫) 등의 공복 색채의 구분 기준을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고려의 공복제도는 신라에서 받아들였다는 주장과 후주에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당과 유사한 제도로 변화된 신라 통일 이후의 복제(服制)와 당의 복제를 받아들인 후주의 복제는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고려 초기 광종대의 공복제는 '자·단·비·록'으로 당의 '자(紫)·비(緋)·록(綠)·청(青)'과는 색채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공복제도는 륙(綠)→비(緋)→단(丹)→자(紫)의 계층적 복색 구조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제 전시(田柴)의 지급을 보면 녹삼(綠衫)층이 자삼(紫衫)층보다 더 많은 전시를 받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계급에 따른 순차적인 복색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같은 복색(服色)에서는 품에 따른 전시 지급액이 다름을 볼 때 같은 복색간의

상하 구분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광종대의 공복제 기록에 색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된 원윤(元尹)·중단경(中壇卿)·도항경(都航卿)·소주부(小主簿)를 보면, 원윤(元尹)은 6품의 관계(官階)이고 중단경(中壇卿)·도항경(都航卿)·소주부(小主簿)등은 관직(官職)으로 사료되어 고려 초의 공복제는 관계와 관직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자색은 복색 간의 상하구분으로 볼 때 다른 색보다는 우위의 색으로 인정되나, 실제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도 자색의 복색이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자(紫)는 자궁(紫宮)으로 궁궐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색의 복색(服色)은 곧 궁과 관련된 공직자의 복색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신분이 낮은 계급도 자색을 사용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전시과 기록에서 자삼충만 문반 무반 잡업 등의 구분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 사료된다.

고려 초기 공복의 ‘단(丹)색’은 광종대의 기록에 만 등장하는 특수 색이다. 이 시기의 불교 관련 금석문에는 특히 단색 착용예가 많이 나타나는데, 금석문의 단색 착용자를 보면 병부관련 직무를 맡거나 광문원(光文院)과 학사원의 한림학자들이다. 한편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인 단서(丹書)가 금석(金石)에 새긴 글이란 의미를 갖는 것과 전시과 기록에서 다른 복색에는 없는 무반(武班)이 단삼충에만 존재하는 것을 연결지어 볼 때, 단색은 고려 초 왕권 강화를 위한 집단의 복색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고려 초의 사색공복제와 관련하여 전시과에서 복색 구분 기준으로 제시된 ‘인품’이 관품과 상대적인 향품으로 해석할 때, 당시 공복제도는 지방 호족 충과 신진 세력을 기준 관료 세력에 포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려 초 공복제도의 또 다른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구당서 권 45 지 제 25 輿服
上元元年八月又制 ... 文武三品已下上服紫金玉帶四品服深緋五品服淺緋並金帶六品服深綠七品服淺綠 並銀帶八品服深青九品服淺青並鑑石帶庶人並銅鐵帶
- 2) 송사 권 153 지 제 106 여복 5 諸臣服下 士庶人服
宋因唐制三品以上服紫五品以上服朱七品以上服綠九品以上服青
- 3) 강은경 (1999). 고려시기 향리 공복제. 한국사상과 문화, 제4집, 수덕문화사.
- 김당택 (1981). 최승로의 상서문에 보이는 후생과 경종 원년 전시과. 고려 광종 연구, 일조각.
- 김미자 (1982). 우리나라 공복에 관한 연구. 복식, 9.
- 박정수 (1984). 고려전기 관복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호철 (1981). 고려 광종대의 공복제도. 고려 광종 연구, 일조각
- 이현숙 (1992). 신라말 魚袋制의 성립과 운용. 사학연구, 43.
- 정일순 (1989). 공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환호 (2003). 신라 골풀제의 전개 과정과 진덕왕대 공복제 정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영 (1987). 고려 초기 공복제의 성립. 부산 사학, 제10집.
- 4) 관직은 관리의 맡은 임무를 말하고, 관품은 관계(官階) 관등(官等)이라고도 하며 관원의 등급을 말한다.
- 5) 유송우 (1998). 한국 복식사. 수학사, p. 117.
- 6) 구당서 권 45 지 제 25 輿服 앞의 책.
- 7) 송사 권 153 지 제106 여복 5 諸臣服下 士庶人服 앞의 책.
- 8) 고려사 72 지 26 여복 관복 公服
“公服 光宗十一年 三月 定百官公服 元尹以上紫衫中壇卿以上丹衫都航卿以上紺衫小主簿以上綠衫。”
- 9) 天祐元年甲子，立國號爲摩震，年號爲武泰，始置廣評省，備員匡治奈【今侍中】，徐事【今侍郎】，外書【今員外郎】，又置兵部大龍部【謂倉部】壽春部【今禮部】奉賓部【今禮賓省】義刑臺【今刑部】納貨府【今大府寺】調位府【今三司】內奉省【今都省】禁書省【今秘書省】南廂壇【今將作監】水壇【今水部】元鳳省【今翰林院】飛龍省【今太僕寺】物藏省【今少府監】，又置史臺【掌習諸譯語】，殖貨府【掌栽植菓樹】障轄府【掌修理城隍】珠淘省【掌造成器物】，又設正匡元輔大相元尹佐尹正朝甫尹軍尹中尹等品職
- 10) 一品曰三重大匡重大匡二品曰大匡正匡三品曰大丞佐丞四品曰大相元甫五品曰正甫六品曰元尹佐尹七品 曰正朝正位八品曰甫尹九品曰軍尹中尹
- 11) 고려사 93 열전 최승로전
‘我朝自太祖以來勿論貴賤任意服着官雖高而家貧則不能備公襍雖無職而家富則用綾羅錦繡’
- 12) 삼국사기 38. 잡지 7 職官(上), 四天王寺成典條
上堂一人 景德王改爲卿 惠恭王復稱上堂 袁莊王又改爲卿 位自奈麻至阿爲之 赤位一人 景德王改爲監 惠恭王復稱赤位 青位二人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青位
- 13) 삼국사기 38. 잡지 7 職官(上), 感恩寺成典條 앞의 책
- 14) 唐會要 권 31 輿服上 魚袋
- 15) 본래 하절은 군졸들이었지만 그들 대신 고려 방문을 지원하는 인사들을 충용했다는 의미에서 충대하절이라 함

- 16) 고려도경 제 7권 王服...中朝人使至則紫羅公服象笏玉代...或聞平居燕息之時則 阜巾白紵袍奧民庶無別也...
- 17) 고려도경 제 19권 民庶 ...常服白紵袍皂巾唯執□(役)趨事則官給紫袍...
- 18) 고려사 제 18권 乙卯 屯府兵于闕庭以備不測 自是選取勇士者號內巡檢分爲兩番 常着紫衣持弓劍分立仗外不避雨雪夜則巡警達曙...
- 19)呂氏春秋 卷 5 大樂 太一出兩儀 兩儀出陰陽 万物所出 造於太一 化陰陽
- 20)淮南子 天文訓 紫宮者太一之居也
- 21) 사기 권 27 天官書 索隱
元命包曰 紫之言此也 宮之言中也 言天神運動 陰陽開閉 皆在此中也
사기
後句四 星末大星正妃 餘三星後宮之屬之匡 衡十二星藩臣 皆曰紫宮
- 22) 고려사 권78 食貨 田制 田柴科
景宗元年 十一月 始定職散官各品田柴科勿論官品高低但以人品定之 紫衫以上作十八品...
文班丹衫以上作十品...緋衫作八品...綠衫以上作十品...殿中司天延壽尚膳院等雜業丹衫以上作十品...緋衫以上作八品...綠衫以上作十品...武班丹衫以上作五品...以下雜吏各以人品支給不同其未及此年科等者一切給田十五結。
- 23) 황선영 (1987). 앞의 책, p. 31.
- 24) 노용필 (2001). 고려 경종초 개혁정치와 그 추진세력, 진단학회, 91, p. 38.
- 25) 김당택 (1981). 최승로의 상서문에 보이는 광종대의 '후생'과 경종원년 전시과. 고려광종연구, p. 72.
- 26) 황선영 (1991). 고려 시정전시과의 분석. 고고역사학지, 제7집.
- 27) 황선영 (1991). 앞의 책.
- 28) 신호철 (1991). 앞의 책, pp. 80-84.
- 29) 노용필 (2001). 앞의 책, p. 33.
- 30) 고려사 권78 食貨1 경종2년 3월 賦開國功臣及向義歸順城主等動田 自五十結至二十結有差
- 31) 노용필 (2001). 앞의 책, p. 41.
- 32) 唐會要 권31 與服上 內外官章服
구당서 권106 王毛仲傳
- 33) 이현숙 (1992). 신라말 魚袋制의 성립과 운용. 사학연구, 43, p. 22.
- 34) 신라 때 창건된 사찰, 〈증보동국여지승람〉 권 44 지증사는 보현(普賢)산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강릉 보현사 자리이다.
- 35) 고려 광종5년(954). 경북 봉화군 하남면 태자리 태자사에 세워졌는데 영주군 영천면 휴천리로 옮겨졌다.
- 36) 고려 광종 원년(950).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 37) 윤성재 (2002). 고려 광종의 정치기반. 고려사학회, p. 147.
광종 9년에 무산계인 통직랑과 관계인 正衛를 겸대하고 한림학사의 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후 예부
- 사, 참지정사를 거쳐 광종 26년에는 내봉령으로 나타나고 있다.
- 38) 노용필 (2001). 앞의 책, p. 38.
- 39) 김당택 (1981). 최승로의 상서문에 보이는 광종대의 '후생'과 경종원년 전시과. 고려광종연구, p. 64.
- 40) 조선금석총람 상, p. 130. 正朝 上柱國 賜丹金魚袋 臣李恒樞
- 41)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p. 663.
- 42) 본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보리사에 있었으나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비석은 천복(天福) 4년(939-태조22년)에 세웠고, 음기(陰記)는 천복(天福) 7년(942)에 새겼다.
- 43) 고려 정종 원년(946)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월출산
- 44) 고려 광종 9년(958).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옥룡사지
- 45) 윤성재 (2002). 앞의 책, p. 148.
광종16년에 병부를 담당하였던 인물. 성종 2년에 좌집정(左執政)으로 최승로 등과 함께 지공거가 되었으며 5년과 6년에도 과거를 주관하였다. 성종의 배향공신이 되었다
- 46) 고려 광종 16년(965).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 봉암사
- 47) 윤성재 (2002). 앞의 책, pp. 147-148.
광종16년 이전에 하급 문신관료로 등장하였는데 광종 말에 이르러서는 왕의 즉근기구인 내의성(內議省)의 고위직인 내의승지사인(內議丞旨舍人)과 함께 군부(軍部)의 차관급인 군부경(軍部卿)을 지내고 있어서 광조의 개혁에 역할이 작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8)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지 소재, 고려 태조 26년(943)
법경대사비는 이 비를 건립한 충주세력과 왕건과의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음기에 충주유씨 세력을 망라하여 기록하였다. 음기나 나타나는 인물은 고려식 관계를 가진 집단과 신라식 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려식 관계를 받은 인물들은 고려로부터 관계를 수여받고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집단이다. 특히 佐尹이상의 고위 관계를 받은 인물들은 중앙에 진출하여 재경제력이 되었다. 그들이 상경조사 한 후 지방사회는 신라관계를 가진 인물들이 하급 지배층으로 관반을 구성하여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것으로 이해된다.(박경자 (1986). 고려시대의 향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9-20)